#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88

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윤준병・임광현・김현정

안태준 • 박희승 • 박홍배

김한규 · 김민석 · 정성호

박성준 • 진성준 • 문진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, 최근에는 농업소득의 성장이 정체되고 농외소득이 빠른 속도로 성장 함에 따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 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, 현행법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 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반면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.

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농촌에서 이탈함에 따라 농가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촌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,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·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##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"농촌여성의"를 "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"를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"로, "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"을 "농업"으로, "농촌 여성에게 자금"을 "자금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농업인
- 2.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
-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에 관한 대상과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 <u>농촌여성의</u> 농외소득 활	제13조(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
동 지원 특례) 국가 및 지방자	<u>인의</u>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
치단체는 <u>「여성기업지원에 관</u>	례) ①
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할 경우	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</u>
<u> 농촌 여성의</u> 농외소득 활동을	<u>대하여</u>
촉진하고 <u>농촌 여성의 경제적</u>	<u>농업</u>
<u>여권신장과 농업</u> ·농촌의 유지	<u>자금</u>
및 발전을 위하여 <u>농촌 여성에</u>	
<u>게 자금</u> ·인력·기술·교육 및	
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	
여야 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
	률」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
	<u>성농업인</u>
<u> &lt;신 설&gt;</u>	2.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
	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
	률」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
	<u>년농업인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에
	관한 대상과 기준, 절차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 정한다.</u>